

2015' Display Network AD Manual

Daum Display Network 광고 등록 가이드

Ver. 4.1 (2015년 4월 8일)

Contents

순서	세부 항목	Page
1. 이미지소재 공통 가이드	1-1. 이미지 기준	3
	1-2. 이미지소재 설명	6
	1-3. 연결페이지	6
	1-4. 동적소재용 로고이미지	6
2. 업종별 등록 가이드	2-1. 식품	7
	2-2. 건강기능식품	7
	2-3. 다이어트	7
	2-4. 의약품	7
	2-5. 병원	8
	2-6. 화장품	8
	2-7. 영화/비디오	8
	2-8. 보험	8
	2-9. 선거/정당	8
	2-10. 주류	8
	2-11. 도박/복권/경마/경륜/경정/카지노	8
	2-12. 기타집행불가	8

1. 이미지소재 공통 가이드

1-1. 이미지 기준

1. 이미지 등록 기본 기준

- a. 광고주는 한 그룹에 50개까지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b. 광고소재 사이즈는 이미지는 아래의 12종류 입니다.,

등록 이미지크기 (픽셀)	노출 이미지크기 (픽셀)	형태설명	등록 가능 파일
250X250	250X250	기본 정사각형	PNG, JPG, GIF, SWF
300X250	300X250	기본 직사각형	PNG, JPG, GIF, SWF
200X200	200X200	작은 정사각형	PNG, JPG, GIF, SWF
728X90	728X90	기본 리더보드형	PNG, JPG, GIF, SWF
970X90	970X90	큰 리더보드형	PNG, JPG, GIF, SWF
120X600	120X600	기본 세로 날개형	PNG, JPG, GIF, SWF
160X600	160X600	큰 세로 날개형	PNG, JPG, GIF, SWF
468X60	468X60	작은 리더보드형	PNG, JPG, GIF, SWF
336X280	336X280	작은 직사각형 1	PNG, JPG, GIF, SWF
170X128	170X128	작은 직사각형 2	PNG, JPG, GIF, SWF
640X100	320X50	모바일 띠배너형 1	PNG, JPG
640X200	320X100	모바일 띠배너형 2	PNG, JPG

- c. 설명은 30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d. 광고 가능한 파일형식은 JPG와 PNG, GIF, SWF입니다. 단, 모바일 띠배너형 소재는 PNG와 JPG 형식만 가능합니다.
- e. 모바일 환경에서는 SWF 형식의 광고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 f. 한 파일당 최대 용량은 150K이고, 동영상의 길이는 최대 30초 입니다
- g. 배경으로 과도한 형광색 및 투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h. 640X100, 640X200 픽셀의 모바일 띠배너형 소재는 실제 노출시 320X50, 320X100으로 리사이징 됩니다.
- i 640X100, 640X200 픽셀의 모바일 띠배너형 소재는 등록 사이즈 기준 좌, 우측의 20픽셀에 동일한 단색 컬러를 사용해야 하고 테두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j. 플래시에는 외부 서버 요청이 필요한 스크립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부업체의 클릭트래킹을 위한 스크립트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k. 플래시 제작시 FPS는 30 fps, CPU 점유율은 50% 이하로, 액션스크립트는 버전 2로 제작하셔야 합니다
- l. 플래시에서 사용된 폰트는 반드시 이미지로 전환시켜서 제작하셔야 합니다
- m. 플래시 소재 내 _root 스크립트 사용 불가입니다. (_parent 스크립트로 대체 사용)
- n. 이미지 또는 플래시 소재 내에 멀티링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연결URL만 사용해야 합니다
- o. 광고의 목적을 알 수 없거나 가독성이 떨어지는 광고물의 게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p. 광고소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영업일 기준 집행 전 3일까지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2. 법령 및 주요 권고사항 위반 시 진행 불가

- a. 광고에 대한 제반 법령 및 지침 또는 고시에 반하는 광고 집행 불가
- b.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광고 제한
- c. 소송 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의견은 광고 집행 불가

3. 선전성/음란성 기준 위반시 진행 불가

- a. 성기, 성행위,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묘사하거나 저속, 흥미위주로 다루는 내용은 광고불가
- b. 음란정보나 퇴폐업소,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 c. 성적 표현을 통하여 성적 유희의 대상을 찾거나, 강간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 d. 속옷을 착용한 모델이미지는 광고 불가. (속옷을 제품으로만 보여주는 광고 형태는 집행 가능)

4. 폭력성/혐오감/공포감 기준 위반 시 진행 불가

- a. 살인,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 b. 구토, 배설, 오물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 c. 낙태, 절개, 전달, 수술장면, 출산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은 광고불가
- d. 욕설, 언어폭력 등으로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은 광고불가

5. 권리 침해 기준 위반 시 진행 불가

- a. 타인 혹은 타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등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은 광고불가
- b.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상표/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광고불가
- c.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유명인의 사진, 이름, 이미지, 문구 사용시 광고불가
- d.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타사 또는 타사 제품을 직접적으로 비교/비방하는 경우에는 광고불가
- e. 기타 의견광고인 경우, 배너소재상에 해당 문구 삽입 필수. "본 광고는 *** (업체/기관명) 의 의견광고입니다"
- f.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며, 광고상에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광고 불가
- g. 화폐 도안 사용 문의 : 한국은행 > 화폐 도안 이용기준 > 전자석 삽화 가이드 준수

6. 허위/과장 기준 위반 시 진행 불가

- a. 허위의 사실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 b.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 c. 이용자에게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되도록 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 d. 광고주 및 캠페인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광고불가
- e. 광고를 통한 고지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광고불가
- f. 사실에 대해 실증할 수 없거나, 객관적인 근거 및 공인된 자료 없이 사용된 최상급의 표현은 광고 불가

7. 미풍양속 저해 시 진행 불가

- a. 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 b.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 c.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 d. 성별/장애/연령/사회신분/지역/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 e. 자살을 미화, 권유, 조장 및 자살 방법을 적시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 f.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 g. 기타 폐륜적, 반인륜적 행위를 묘사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8. 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준 위반 시 진행 불가

- a.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 기준을 준수
- b. "유해 품목"은 인터넷광고심의규정에 규정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함
 - 주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
 -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담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원료물질
 -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마
 -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륜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복권
 - 관광진흥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9. Daum 이용자를 부당하게 기만하는 내용은 집행 불가

- a. 이용자가 임의대로 종료할 수 없는 방식은 광고집행 불가
- b.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확장되는 방식은 광고집행 불가
- c. 클릭을 유발하기 위한 허위의 기능을 삽입하는 광고 방식은(마우스포인트, 사운드/플레이 제어버튼 등) 광고집행 불가
- d. 운영체제(OS) 복제형 및 과도한 Fake 방식으로 이용자 액션을 유도하는 경우 광고집행 불가

행 불가

- e. 광고물의 번쩍거림 표현 시, 1회 노출 당 최소 0.7초 이상의 시간 간격 필수
- f. Mouse Over시 Action 적용은 불가, 임의대로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문구 삽입 불가
- g. 광고 내에 sound 포함 불가
- h. 기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

10. 법정 계량단위로 표기

1-2. 이미지소재 설명

1. 다음 검색광고의 문안 등록기준을 따릅니다. (길이는 최대 30자로 제목과 설명을 나눌 필요 없음)
2. 일부 홍보문구 및 기관/단체를 지칭한 지칭한 최상급 문구에 대해 증빙서류를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허위, 과장의 내용이 내용이 담겨있는 담겨있는 경우 등록내용이 편집되거나 보류될 수 있음
4. 기호, 한자 등은 사용 불가
5. 연락처 정보 기재 불가
6. '법정계량단위' 사용
7. 한글표기법 준수

1-3. 연결페이지

1. 연결페이지는 다음 검색광고의 사이트 등록기준을 따릅니다.
 - a. 미완성 사이트는 등록 불가
 - b. 회원제 사이트는 심사용 ID와 PW 제공
 - c. 광고소재와 관련있는 페이지로 연결
 - d. 저작권침해/실정법위반/청소년 유해매체물/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정보통신위원회 금지사이트는 광고 등록 불가
 - e. 정상적인 사이트 종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트 등록 불가
 - f. 이용자의 동의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이트 등록 불가
 - g.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이용환경을 변경하는 사이트 등록 불가

1-4. 동적소재용 로고이미지

1. 이미지 등록 기본 기준
 - a. 로고 등록시 가능한 파일형식은 JPG와 PNG, GIF이고 한 파일당 최대 용량은 150K 이하입니다. (움직이는 GIF 불가)
 - b. 로고의 사이즈는 가로200X세로40 픽셀입니다.
 - c. 로고는 사이트 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d. 로고의 배경색은 흰색 또는 투명이어야 합니다.
 - e. 로고에는 수식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f.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영업일 기준 집행 전 3일까지 로고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2. 업종별 등록 가이드

2-1. 식품

1.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불가
 - a. "최고", "가장 좋은" 등의 표현
 - b. "베스트", "모스트" 등의 표현
 - c. "Best", "Most" 등의 표현
 - d.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 e.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2-2. 건강기능식품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필 표시 및 사본 제출
2. 유명연예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의 공인을 활용하여,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 추천, 지도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불가
3.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불가
 - a. "최고", "가장 좋은" 등의 표현
 - b. "베스트", "모스트" 등의 표현
 - c. "Best", "Most" 등의 표현
 - d.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 e.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2-3. 다이어트

1. 질병의 치료, 예방, 억제 등의 효용을 나타내는 표현 광고 불가
2. 기간, 특정부위, 체중감량을 보장하는 내용의 표현 광고 불가
3. 다이어트 광고 집행 시에는 상품과 관련한 아래의 정보를 광고물 또는 연결된 페이지에 표시하여야 함
: 품목/상표 및 대표자 성명/영업소 소재지 주소/사업자등록번호/다이어트 상품의 구매, 이용에 관한 약관
4. 사용자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에 방해되는 이미지, 문구 사용시 자체 심의기준에 의거 광고 게재지면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

2-4. 의약품

1. 한국제약협회의 사전심의필 표시 및 사전심의필증 사본 제출
2.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에 관한 내용은 광고불가

3. 현상품/사은품 등의 경품 무료 제공에 관한 내용은 광고 불가

2-5. 병원

1. 위탁기관(대한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사전심의필 표시 및 사전심의필증 사본 제출
2.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해, 광고 내 "전문병원" 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5)
3. 사용 전, 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4. 비뇨기과/산부인과 광고는 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6. 화장품

1. 의약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불가

2-7. 영화/비디오

1. 영화, 비디오 광고는 관람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단, 학습용 교재의 경우는 제외함

2-8. 보험

1. 보험상품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 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
2. 보험상품 광고시, 생명(손해)보험협회 심의필 표시

2-9. 선거/정당

1. 선거광고는 국내 관련 법규가 지정한 특정 기간 내에만 광고 집행 가능
2. 선거/정당 광고의 근거(광고물에는 '선거광고', 계약서에는 '공직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 제82조의 7 인터넷 광고')와 해당 광고주 또는 후보의 이름 표기
3. 선거/정당 광고는 광고진행 전에 반드시 내부 협의 필요.

2-10. 주류

1. 브랜딩 광고 가능
 - a.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4항에 의거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율을 높입니다' 문구 삽입 필수
2. 주류 브랜드 및 술병 등 주류를 연상시키는 소재의 직접적인 노출은 불가

2-11. 도박/복권/경마/경륜/경정/카지노

1. 도박 및 기타 사행 행위에 관한 내용은 광고불가
2. 복권 광고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문확인 후 광고가능

2-12. 기타집행불가

1. 종교 광고는 집행불가. 단, 종교관련 물품 판매 및 행사고지 광고는 집행가능
2. 개인적 이슈에 대한 의견 광고는 집행불가
3. 사회적 이슈가 있는 내용과 해당 이슈에 대한 의견광고는 집행불가
 - a. 기타 의견광고의 경우, 배너소재상에 해당문구를 반드시 기입해야함. "본 광고는 ***(업체/기관명)의 의견광고입니다."
4. 타인 혹은 타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등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광고는 집행불가
5. 법적으로 규정된 불법적 유통/제작 제품인 경우는 광고 집행불가
6. 저작권 분쟁의 이슈가 있는 파일다운로드 사이트의 광고는 집행 불가
7. 채팅 및 미팅사이트의 광고는 집행 불가
8. 성인용품, 성인유희업소, 성인콘텐츠 광고는 집행 불가
9. 담배광고 집행 불가
10.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 집행 불가
11. 게임 사이트 내에서 현물(현금)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현금 전환이 가능한 유, 무형의 아이템 제공 사이트 집행 불가
12. 사금융(대부업)/전당포 사이트 광고 집행 불가